

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동 안내문

■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가 2024년1월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노인장기요양기관(재가기관) 기본수가 (월 한도액)

구 분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 치매등급	인지지원 등급
월 한도액	변경전(2023)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
	변경후(2024)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인상률		9.81%	10.63%	2.72%	2.73%	2.72%	3.06%

■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~6%

■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분	방문당 시간	'23년 수가	'23년 본인부담	'24년 수가	'24년 본인부담
가-1	30분	16,190	2,429	16,630	2,495
가-2	60분	23,480	3,522	24,120	3,618
가-3	90분	31,650	4,748	32,510	4,877
가-4	120분	40,280	6,042	41,380	6,207
가-5	150분	46,970	7,046	48,250	7,238
가-6	180분	52,880	7,932	54,320	8,148
가-7	210분	58,930	8,840	60,530	9,080
가-8	240분	65,000	9,750	66,770	10,016

■ 2024년1월1일부터 유급휴일(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), 근로자의 날, 대체공휴일 등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의 50%를 가산한다.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한다.

■ 야간(18시~22시)에 지급하던 급여비용 20%,은 2020년1월1일부터 폐지되었다

▶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▶ 23년1월부터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1일이라도 제공받은 월에는 주야간보호를 월15일(1일8시간이상)이 용하여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음을 해당사항 수급자(보호자)께서는 참고하여야 한다.

▶ 1,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종전 6회에서 월8회로 확대가능 함.

※ 이용량 확대 고려하여 1·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인상

▶ 이용료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10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.

▶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,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부한다.

2024년 1월 1일

수급자(보호자) : (인)

연제구재가복지센터 (직인)



연제구재가복지센터